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0일, 정을호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7.24.)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2. 6.) :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2.20.)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8.)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5.7.8.)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정을호 의원)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생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u>1.5배</u> 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 ----- ---- <u>1.2배</u> -----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u>1.5배</u> 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⑪ ----- ----- ----- <u>1.2배</u> ----- ----- ----- -----.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정책을 살펴보면, 1988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인상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1989년에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2003년에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였고,

2010년부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행 중인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인상률상한제’가 시행 중임.

개정안은 최근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기준 인상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여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교육부의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¹⁾에서 발표한 2024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²⁾ 중 26개교(13.5%)는 인상, 166개교(86.0%)는 동결, 1개교는 인하(0.5%)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³⁾은 6,827.3천원으로 전년(6,794.8천원) 대비 32.5천원(0.5%) 상승하였고,

전문대학 130개교 중 18개교(13.8%)는 인상, 111개교(85.4%)는 동결, 1개교(0.8%)는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182.6천원으로 전년(6,127.2천원) 대비 55.4천원(0.9%)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매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한선은 물론 당해연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음.⁴⁾

1) 교육부,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4.29.

2)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사이버대학, 폴리텍 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 제외)

3) 전체 (학과별·학년별 등록금×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4) 동법 개정 이후 2011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공시하고 있음. 대학은 교육부가 고시한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2011년 이후 매년 동결하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음.

이렇게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수준으로 책정해왔던 배경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제도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임.

< 연도별·대학별 등록금 및 인상률 >

(단위 : 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년제	국공립	416 (0.25%)	418 (0.50%)	418 (0.04%)	419 (0.15%)	420 (0.28%)	421 (0.17%)
	사립	745 (0.31%)	748 (0.30%)	749 (0.16%)	752 (0.42%)	757 (0.63%)	762 (0.75%)
평균		671 (0.35%)	673 (0.30%)	674 (0.10%)	676 (0.32%)	679 (0.50%)	683 (0.52%)
전문대	국공립	234 (△0.31%)	235 (0.43%)	236 (0.50%)	237 (0.15%)	238 (0.44%)	239 (0.51%)
	사립	601 (0.23%)	603 (0.27%)	604 (0.29%)	607 (0.40%)	619 (2.06%)	625 (0.91%)
평균		594 (0.25%)	596 (0.30%)	597 (0.23%)	600 (0.46%)	612 (2.01%)	618 (0.95%)
전체대학		653 (0.33%)	655 (0.31%)	656 (0.18%)	659 (0.41%)	664 (0.85%)	669 (0.64%)
당해년도 물가인상률		0.4%	0.5%	2.5%	5.1%	3.7%	
직전 3개연도 평균물가상승률		1.5%	1.3%	0.8%	1.1%	2.7%	3.76%
인상률 법정상한		2.25%	1.95%	1.2%	1.65%	4.05%	5.64%

자료: 교육부

즉, 현재도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밑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책정되어왔고, 등록금이 대학의 중요한 교육 자원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상을 상한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및 대학 경쟁력 하락⁵⁾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 대학 재정여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국가장학금 제도 및 국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조인식, 등록금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제62호 pp28, 2023.12.29.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하향하는 것은 열악한 대학 재정 문제의 가중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학 역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받는 현실에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결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수정안 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8.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의결일을 기준으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이 도과하였고, 법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0월 1일”로 수정함(안 부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10월 1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u>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부 칙 <u>이 법은 2025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한 다.</u>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 중 “1.5배”를 “1.2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1.5배”를 “1.2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생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u>1.5배</u> 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 ----- ----- <u>1.2배</u> -----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u>1.5배</u> 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⑪ ----- ----- ----- ----- <u>1.2배</u> ----- ----- ----- -----.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